



제319회 남양주시의회 (임시회)  
제1차 복지환경위원회

**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**  
**일부개정조례안**  
**[박윤옥 의원 대표발의]**  
**검 토 보 고 서**

2026. 4. 17.

**복 지 환 경 위 원 회**

전 문 위 원 조 공 선

#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7일 박윤옥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4월 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

## 2. 제안이유

-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·체계화하며 장애인복지 관련 개별 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고, 그 밖에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등 일부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심의 기능 정비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 운영체계 명확화(안 제4조~제8조)
- 다. 위원회 운영 실무 규정 정비(안 제9조~제12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1
- 나. 예산조치 : 불임2
- 다. 관련부서 : 장애인복지과
- 라. 입법예고 : 2026. 4. 7. ~ 2026. 4. 13. (6일간) /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에 따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고, 관련 개별 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
-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·구체화(안 제2조)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, 종합계획,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등 주요 정책 전반을 포괄하도록 한 점은 정책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, 위원회의 기능적 범위를 명확히 한 점은 정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13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)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.

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
제12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1.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
2.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 및 관련조문

#### 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

#### 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2조(기능) ①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#### 3.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
- 제10조(의견의 청취 등)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·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재정 수반에 관한 요인인 구체적 사업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추계가 어려움

### 4. 작성자

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